

세금, 기본을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세금을 언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할 때도 있다.

이럴 경우 무조건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고, 부당한 세금에 대해 구제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금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소비가 이뤄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가전 제품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 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우리는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세금의 종류

세금은 크게 중앙 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가 14종, 지방세가 17종으로 총 31종이라고 한다.

[국 세]

▶ 소득세 : 연도중에 종합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다.

다만, 근로 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뗀 후 연말에 정산을 하며,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은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 내는 세금이다.

단, 상속 재산 가액이 5억원(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 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다. 증여받은 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억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에는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 관세 : 국세 중 관세는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방세]

▶ 취득세 : 부동산을 매입하면 30일 이내에 취득 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등록세 :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취득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 가액의 5.8%를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내야 한다.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7월 31일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 기준액 계산시 적용하는 가산율(현재 2~10%)을 대폭 인상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산율은 12월까지 결정하여 200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안은 4~30%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약 3만원 정도 증가될 예정이다.

▶ 종합토지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16일~10월 31일이다.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1기분은 6월 16일~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세금을 제 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첫째,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일정액(통상 20~40%)의 가산세를 붙여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둘째, 세금을 체납하면 정수 기관에서는 체납 세액을 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한다.

셋째, 일정 횟수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출국금지, 여권 발급의 제한,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실제로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나갔다가 출국을 하지 못해 창피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세금을 제 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부당하다고 해서 내지 않고 방치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구제 절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국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 구제 제도가 있으므로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적극 이용해 부당한 세금을 구제 받도록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국세와 관련된 모든 예로사항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해 다음과 같은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해주고 있다.

-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공부상으로는 3년 미만 소유한 것으로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 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체납 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당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
- 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 청구를 해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 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불복을 청구하면 아무리 청구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심리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도 소명 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관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으며,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도 국세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세금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너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막상 문의하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다. 이럴 때는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

국세청에서는 세금 상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 통화 기본 요금만을 부담하고(휴대폰을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전문 상담 요원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화세무상담센터'를 클릭하면 기준의 상담 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지방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